|  |  |  |
| --- | --- | --- |
| **내외자기업과 개인의 도시유지 건설세**  **및 교육비부가 제도 통합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  國發 [2010] 3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관:  세제를 한층 더 통일하고 세금부담을 공정하게 하여 평등하게 경쟁하는 외부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가 통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의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 조세 임시조례 적용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여, 국무원은 내외자기업과 개인의 도시유지 건설세 및 교육비 부가제도를 통합시키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통지를 한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적 개인은 국무원이 1985년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건설세 임시조례》와 1986년에 반포한 《교육비부가 징수 임시규정》을 적용한다. 1985년 및 1986년 후 국무원 및 국무원 재세주무부서가 반포한 도시유지 건설세 및 교육비 부가 관련 법규, 규장, 정책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적 개인에게 똑 같이 적용된다.  무릇 이 통지와 저촉되는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국무원  2010년 10월 18일 |  | **国务院关于统一内外资企业和**  **个人城市维护建设税和**  **教育费附加制度的通知**  国发〔2010〕35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为了进一步统一税制、公平税负，创造平等竞争的外部环境，根据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五次会议通过的《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适用增值税、消费税、营业税等税收暂行条例的决定》，国务院决定统一内外资企业和个人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制度，现将有关问题通知如下：  　　自2010年12月1日起，外商投资企业、外国企业及外籍个人适用国务院1985年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和1986年发布的《征收教育费附加的暂行规定》。1985年及1986年以来国务院及国务院财税主管部门发布的有关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的法规、规章、政策同时适用于外商投资企业、外国企业及外籍个人。  凡与本通知相抵触的各项规定同时废止。  　　　　　　　　　　　　　　　　　　　　　　　　　　　　　 　国务院　　　　　　　　　　　　　　　　　　　　　　　　　　二○一○年十月十八日 |